

V.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 관련

① 김영재, 김상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17. 2. 28.

사건번호 특검 2016년 형제0호, 2017년 형제00호, 제00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00000호, 제00000호, 제00000호)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신자

특별검사 박영수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1. 피고인 김영재 (000000-1000000), 56세

직업 의사 (김영재의원 원장)

주거

등록기준지

죄 명 국회에서의증언 ·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적용법조 국회에서의증언 · 감정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제90조, 제22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134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2. 피고인 김상만 (000000-1000000), 54세

직업 의사 (대통령 자문의, 전 ○○의원 의사)

주거

등록기준지

죄명 의료법위반

적용법조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없음

II. 공소사실

1. 피고인 김영재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1993. 8.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빌딩 7층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주로 하는 '김영재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해 온 의사이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에 연월일 별로 구입처와 구입량, 진료과, 사용량, 재고량 등을 기재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위 김영재의원에서 간호조무사 A○○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의 사용내역을 기재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면서, 2014. 4. 11.경에는 피고인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 박채윤(개명 전 이름 '박인숙')을 상대로 얼굴 피알피 등 피부성형 시술을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 28cc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날 박채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 28cc를 사용한 것처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프로포폴 사용량 합계 1,522cc(20cc들이 76.1병)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2) 의료법위반

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의 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위 김영재의원에서 그곳 상담부실장 B○○, 간호조무사 A○○와 함께 진료기록부를 작성·관리하면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2014. 4. 11.경 박채윤에게 프로포폴 28cc를 투여하거나 얼굴 피알피 등 피부성형 시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내용의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진료기록부 부실기재의 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진료를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김영재의원에서 그곳을 찾은 환자 C〇〇을 상대로 얼굴 보톡스 등 피부시술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환자 이름과 성별만 기재하였을 뿐 그 외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다른 인적사항은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았다.

다) 진료기록부 미작성의 점

피고인과 박채윤은 2013. 말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십 수 차례에 걸쳐 I〇〇 행정관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내 대통령 관저를 출입하면서 대통령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거나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일명 '사각보톡스', '리프팅 보톡스'), 더모톡신 등 간단한 미용성형 시술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4. 5. 17.경 휴일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박채윤으로부터 "I〇〇 행정관이 연락이 있는데 대통령을 찾아뵈어야 할 것 같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왔고, 그 무렵 대통령의 입가 마리오네트 라인에 명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던 피고인은 명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는 주사제인 '히알라제'를 준비하여 박채윤과 함께 I〇〇을 만나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 그곳에서 대통령의 입가에 히알라제를 주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하순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성형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고도 그에 관해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3) 국회에서의증언 ·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에게 총 4회 가량의 보톡스 시술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3회의장 245호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앞에서, 이만희 위원의 "김영재 의원 본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미용 목적, 주름 살을 편다든지, 이런 필러를 한다든지, 보톡스를 한다든지 이런 미용 목적으로 치료나 처치를 하신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미용 시술을 청와대 내에 들어가서 시술한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회에서의증언 · 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4)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김영재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박채윤은 위 상경빌딩 6층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하 '와이제이콥스 메디칼'이라 함)의 대표이사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존제이콥스(이하 '존제이콥스'라 함)의 이사로서 피고인과 박채윤은 부부이다.

안종범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산업통상자원비서관·중소기업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

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정책조정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기획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 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던 사람이다.

안종범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2014. 8.경부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김영재의원 및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중동, 중국 등으로의 해외 진출, 존제이콥스의 2016년 청와대 설 선물세트 포함,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2016년도 벤처형 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 선정 등 피고인, 박채윤 부부가 운영하는 김영재의원 및 위 2개 업체의 영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D○○ 보건복지부장관, E○○ 보건복지비서관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을 피고인, 박채윤 부부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박채윤 부부를 지원할 것을 지시·요청하는가하면 자신도 직접 김영재의원의 해외진출 및 와이제이콥스에서 제조·판매하는 안면거상용 실의 개발·납품과 관련된 지원활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박채윤은 안종범에게 그 지원활동에 대한 사례조로 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가) 2014. 8. 하순경 고가의 여성용 스카프 및 양주 제공

피고인과 박채윤은 2014. 8. 초순경 안종범으로부터 “내가 아랍 에미리트로 출장을 가는데 현지에 가서 중동진출에 도움을 될 만한 자리를 마련해줄 테니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고 처남 F○○ 등과 함께 2014. 8. 18.경 아랍 에미리트로 출국하여 아부다비에서 안종범을 만났고, 그곳에서 안종범의 주선으로 현지 보건청장인 닥터 ‘△△’ 등을 만나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 후 박채윤은 현지 쇼핑센터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에르메스 명품 여성용 스카프를 구입한 후 2014. 8. 21.경 귀국행 비행기내에서 F○○을 통해 안종범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박채윤과 2014. 8. 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 내 중식당에서 안종범 및 그의 처 G○○과 부부동반 모임을 하면서 그 전날 구입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양주 1병을 안종범, G○○ 부부에게 교부하였다.

나) 고가의 미용성형 시술 무료 제공

박채윤은 2014. 8. 30. 위 부부동반 모임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 안종범, G○○ 부부에게 김영재의원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24.경 G○○에게 시술 비용 합계 280만 원 상당인 'V라인 실 리프팅' 등의 미용성형 시술을, 2014. 11. 23.경 안종범에게 시술 비용 합계 110만 원 상당인 '페이스 피알피' 등의 미용성형 시술을, 2015. 8. 초순경 G○○에게 시술 비용 합계 400만 원 상당인 'V라인 실 리프팅' 등의 미용성형 시술을 각각 제공하였다.

다) 고가의 여성용 핸드백 및 현금 제공

피고인은 박채윤과 함께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안종범이 입원해 있던 병원 입원실을 찾아가 병문안을 하면서 시가 336만 원 상당인 루이뷔통 명품 가방과 현금 500만 원을 안종범, G○○ 부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채윤과 공모하여 2014. 8. 하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안종범의 직무와 관련하여 안종범, G○○ 부부에게 합계 1,826만 원 상당의 무료 미용성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김상만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빌딩에 있는 ○○의원에서 항노화센터 진료 부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빌딩에 있는 ○○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자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9. 위 ○○의원에서 J○○를 상대로 진료를 하고, J○○에게 면역기능강화주사제⁸³⁾를 처방·처치하였음에도 마치 K○○을 진료한 것처럼 위 내용을 K○○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의원 등에서 행한 J○○에 대한 진료기록을 K○○, H○○, 길라임 등 다른 사람 또는 허무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83) 비타민 B, C와 마그네슘, 교미노틴(일명 '감초주사'), 타치온을 혼합한 주사제

② 박채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17. 2. 22.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00000호(특검 2017년 형제00호)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신자
특별검사 박영수 _____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박채윤 (000000-2000000), 47세

직업 의료기기업체 운영

주거

등록기준지

죄명 뇌물공여

적용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134조.

구속여부 2017. 2. 4. 구속(2017. 2. 3. 구인)

변호인

II.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빌딩 6층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하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라 함)의 대표이사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존제이콥스(이하 '존제이콥스'라 함)의 이사이고, 김영재는 위 상경빌딩 7층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주로 하는 김영재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피고인과 김영재는 부부이다.

안종범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산업통상자원비서관·중소기업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기획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 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던 사람이고, E○○는 2014. 8.경부터 ○○까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 소속 보건복지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보좌하여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이다.

안종범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2014. 8.경부터 김영재의원 및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중동, 중국 등으로의 해외 진출, 존제이콥스의 2016년 청와대 설 선물세트 포함,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2016년도 벤처형 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 선정 등 피고인, 김영재 부부가 운영하는 김영재의원 및 위 2개 업체의 영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D○○ 보건복지부장관, E○○ 보건복지비서관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을 피고인, 김영재 부부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김영재 부부를 지원할 것을 지시·요청하는가하면 자신도 직접 김영재의원의 해외진출 및 와이제이콥스에서 제조·판매하는 안면거상용 실의 개발·납품과 관련된 지

원활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김영재는 안종범과 김진수에게 이들의 지원 활동에 대한 사례조로 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1. 안종범, G○○ 부부에 대한 금품제공

가. 김영재와의 공동범행

1) 2014. 8. 하순경 고가의 여성용 스카프 및 양주 제공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안종범으로부터 “내가 아랍 에미리트로 출장을 가는데 현지에 가서 중동진출에 도움을 될 만한 자리를 마련해줄테니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고 김영재, 남동생 F○○ 등과 함께 2014. 8. 18.경 아랍 에미리트로 출국하여 아부다비에서 안종범을 만났고, 그곳에서 안종범의 주선으로 현지 보건청장인 닥터 ‘△△’ 등을 만나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현지 쇼핑센터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에르메스 명품 여성용 스카프를 구입한 후 2014. 8. 21.경 귀국행 비행기내에서 F○○을 통해 안종범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김영재와 2014. 8. 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 호텔 내 중식당에서 안종범 및 그의 처 G○○과 부부동반 모임을 하면서 그 전날 구입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양주 1병을 안종범, G○○ 부부에게 교부하였다.

2) 고가의 미용성형 시술 무료 제공

피고인은 2014. 8. 30. 위 부부동반 모임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 안종범, G○○ 부부에게 김영재의원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김영재는 2014. 10. 24.경 G○○에게 시술 비용 합계 280만 원 상당인 ‘V라인 실 리프팅’ 등의 미용성형 시술을, 2014. 11. 23.경 안종범에게 시술 비용 합계 110만 원 상당인 ‘페이스 피알피’ 등의 미용성형 시술을, 2015. 8. 초순경 G○○에게 시술 비용 합계 400만 원 상당인 ‘V라인 실 리프팅’ 등의 미용성형 시술을 각각 제공하였다.

3) 고가의 여성용 핸드백 및 현금 제공

피고인은 김영재와 함께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안종범이 입원해 있던 병원 입원실을 찾아가 병문안을 하면서 시가 336만 원 상당인 루이뷔통 명품 가방과 현금 500만 원을 안종범, G○○ 부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영재와 공모하여 2014. 8. 하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안종범의 직무와 관련하여 안종범, G○○ 부부에게 합계 1,826만 원 상당의 무료 미용성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설과 추석 명절 직전 현금 제공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인 설 명절 무렵, 2015. 9. 하순경인 추석 명절 무렵, 2016. 2. 초순경인 설 명절 무렵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안종범, G○○ 부부의 집을 찾아가 G○○에게 존제이콥스 화장품 세트 여러 개와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어 총 3회에 걸쳐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2015. 3. 9.자 고가의 여성용 핸드백 제공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안종범의 집을 찾아가 그곳 경비실에 시가 323만 원 상당인 보테가 베네타 명품 가방을 맡겨두고, G○○으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3) 2015. 8. 11.경 현금 제공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 있는 한식당에서 안종범, E○○, ○○병원장 L○○, ○○병원 연구부원장 M○○, 대통령 주치의 N○○ 등을 만나 와이제이콥스메디칼과 ○○병원 간의 협약체결 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찬을 한 후, 위 식당 앞길에서 안종범에게 여름 휴가비를 결제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사후정산조로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4) 2016. 5. 중 · 하순경 현금 제공

피고인은 2016. 5. 14. 안종범의 딸 결혼식 직후인 2016. 5. 중 · 하순경 위 안종범의 집을 찾아가 위 G○○에게 존제이콥스 화장품 세트 여러 개와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2016. 5. 중 · 하순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안종범의 직무와 관련하여 안종범, G○○ 부부에게 합계 3,12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E○○에 대한 금품제공

가. 2015. 6. 하순경 내지 7. 초순경 사이 현금 제공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내지 7. 초순경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호텔 내 ○○커피숍에서 E○○에게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과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나. 2015. 7.경 고가의 여성용 핸드백 제공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호텔 내 중식당에서 E○○를 만나 식사를 하고 헤어지면서 그곳 프런트에 336만 원 상당인 루이뷔통 명품 가방을 맡겨두고, E○○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다. 2015. 9.경 현금 제공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경복궁역 인근 음식점 앞 길에서 E○○에게 존제이콥스 화장품 세트와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라. 2016. 1. 하순경 내지 2. 초순경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내지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E○○의 집을 찾아가 그곳 경비실에 2,985,000원 상당인 보테가 베네타 명품 가방을 맡겨두고, E○○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E○○의 직무와 관련하여 E○○에게 합계 10,3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III. 첨부

1.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1부
2. 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용) 1부
3. 변호인선임서 3부
4. 구속기간연장결정서 1부

3 안종범

박근혜정부의 최순실등 민간인에 의한 한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17. 2. 28.

사건번호 특검 2017년 형제00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00000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안종범

직업 무직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주 거

등록기준지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I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산업통상자원비서관·중소기업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기획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 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던 사람이다.

박채윤은 서울 강남구 ○○빌딩 6층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하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라 함)의 대표이사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존제이콥스(이하 '존제이콥스'라 함)의 이사이고, 김영재는 위 ○○빌딩 7층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주로 하는 김영재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박채윤과 김영재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2014. 8.경부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김영재의원 및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중동, 중국 등으로의 해외진출, 존제이콥스의 2016년 청와대 설 선물세트 포함,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2016년도 벤처형 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 선정 등 박채윤, 김영재 부부가 운영하는 김영재의원 및 위 2개 업체의 영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D○○ 보건복지부장관, E○○ 보건복지비서관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을 박채윤, 김영재 부부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들로부터 여금 박채윤, 김영재 부부를 지원할 것을 지시·요청하는가하면 자신도 직접 김영재의원의 해외진출 및 와이제이콥스에서 제조·판매하는 안면거상용 실의 개발·납품과 관련된 지원활동을 하였다.

1. 2014. 8. 하순경 고가의 여성용 스카프 및 양주 수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박채윤, 김영재 부부에게 “내가 아랍 에미리트로 출장을 가는데 현지에 가서 중동진출에 도움을 될 만한 자리를 마련해줄테니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하고, 박채윤, 김영재, 남동생 FOO 등과 함께 2014. 8. 18.경 아랍 에미리트로 출국하여 아부다비에서 박채윤 일행이 현지 보건청장인 닥터 ‘△△’ 등을 만나 그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주선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21.경 아부다비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비행기내에서 박채윤이 두바이 현지에서 구입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에르메스 명품 여성용 스카프를 FOO으로부터 교부받고, 2014. 8. 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 내 중식당에서 박채윤, 김영재 부부와 부부동반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김영재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고가의 의료 서비스(미용성형 시술) 수수

피고인은 2014. 8. 30. 위 부부동반 모임 이후 박채윤이 피고인 부부를 상대로 김영재의원에 들러 미용성형 시술을 받으라고 권유하자 부부가 번갈아 가며 그 시술비용의 지급 없이 미용성형 시술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24.경 처 GOO으로 하여금 김영재의원에서 김영재로부터 시술 비용 합계 280만 원 상당인 ‘V라인 실 리프팅’ 등의 미용 성형 시술을 받게 하고, 2014. 11. 23.경 자신도 김영재의원에서 김영재로부터 시술 비용 합계 110만 원 상당인 ‘페이스 피알피’ 등의 미용성형 시술을 받고, 2015. 8. 초순경 GOO으로 하여금 김영재의원에서 김영재로부터 시술 비용 합계 400만 원 상당인 ‘V라인 실 리프팅’ 등의 미용성형 시술을 받게 하였다.

3. 설과 추석 명절 직전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인 설 명절 무렵, 2015. 9. 하순경인 추석 명절 무렵, 2016. 2. 초순경인 설 명절 무렵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OO을 통해 박채윤으로부터 존제이콥스 화장품 세트 여러 개와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총 3회에 걸쳐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고가의 여성용 핸드백 2개 및 현금 수수

가. 2015. 3. 9.자 고가의 여성용 핸드백 수수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G○○을 통해 박채윤으로부터 시가 323만 원 상당인 보테가 베네타 명품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나. 2015. 5. 초순경 고가의 여성용 핸드백 및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 입원실에서 박채윤, 김영재 부부로부터 시가 336만 원 상당인 루이뷔통 명품 가방 1개와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5. 8. 11.경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 있는 한식당에서 박채윤, F○○, E○○, ○○병원장 L○○, ○○병원 연구부원장 M○○, 대통령 주치의 N○○ 등을 만나 와이제이콥스메디칼과 ○○병원 간의 협약체결 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찬을 한 후, 위 식당 앞길에서 박채윤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6. 2016. 5. 중 · 하순경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6. 5. 14. 피고인의 딸 결혼식 직후인 2016. 5. 중 ·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G○○을 통해 박채윤으로부터 존제이콥스 화장품 세트 여러 개와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부터 2016. 5. 중 · 하순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박채윤, 김영재 부부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4,949만 원 상당인 금품 및 무료 미용성형 시술을 수수하였다.

III. 첨부

1. 변호인선임서 1부

4 정기양

박근혜정부의 최순실등 민간인에 의한 한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17. 2. 28.

사건번호 특검 2017년 형제00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00000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정기양

직업 의사 (○○대학교 ○○병원 피부과장)

주 거

등록기준지

죄명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적용법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II.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이자 ○○병원 피부과 의사로서 2013. 3.경부터 2014. 7.경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당시 대통령 주치의였던 S○○으로부터 '대통령의 피부미용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S○○과 사이에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에게 보톡스·필러 등 간단한 미용성형 시술을 해드리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약 3회에 걸쳐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의 이마와 눈가 주름이 있는 부분 등에 보톡스·필러를 주입하는 미용성형 시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2.경 동료 의사의 주선으로 미용성형 시술을 주로 하는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을 만나 그가 개발한 안면조직고정용 실을 이용한 주름개선 시술[일명 '뉴 영스 리프트(NEW YOUNGS LIFT)']에 대해 알게 되어 향후 위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의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3. 2.경 피고인 자신이 직접 김영재로부터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받아보고, 자신의 지인들에게도 권유를 하여 그들이 김영재로부터 위 시술을 받는 과정을 참관하는가하면 김영재로부터 위 시술에 이용되는 실을 제공받아 ○○병원에서 자신의 환자에게도 직접 시술을 해보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S○○과 2013. 7. 28.경부터 2013. 8. 5.경까지 사이로 예정된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 동안 대통령에게도 위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해드리기로 하고, 2013. 7. 하순경 김영재 측에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김영재의 처 박채윤과 처남 F○○을 상대로 "김영재 원장의 시술 과정에 한 번 더 참관을 하고 싶다."고 하거나 "친척 중에 시술을 해드릴 분이 생겨서 그러니 실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통령을 상대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3회의장 245호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앞에서, 최교일 위원의 "대통령에게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저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III. 첨부

1. 변호인선임서 1부

5 이임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17. 2. 28.

사건번호 특검 2017년 형제00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 제00000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이임순

직업 의사 (○○병원 산부인과 교수)

주 거

등록기준지

죄명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적용법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구속여부 불구속

별 호 일 없음

II. 공소사실

피고인은 ○○병원 산부인과 교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경 ○○병원에 내원한 T○○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T○○의 보호자인 U○○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U○○도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U○○이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는 것을 알았고, 가깝게 지내오던 중 2014. 6. 중순경 및 2014. 7. 하순경 ○○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해 묻는 U○○에게 피고인과 오랜 기간 국내외 산부인과 관련 학회활동을 함께 해온 ○○병원 산부인과 N○○ 교수 등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그 직후 위 N○○이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되는 것을 보고는 U○○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새삼 실감을 하게 되어 2015. 6.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는 U○○의 요청에 따라 N○○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식약처장, 베트남 대사 후보자 등을 물색하여 U○○에게 추천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경 U○○으로부터 “미용성형에 사용되는 실을 제조·납품하는 업체가 있는데 ○○병원에서도 그 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과 함께 주식회사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인 박채윤의 연락처를 받았고, 이에 그 무렵 N○○에게 연락을 하여 “미용성형에 사용되는 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은 제품이라고 하니 ○○병원 성형외과로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N○○에게 위 박채윤의 연락처를 전달하며 소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3회의장 245호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 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앞에서, 장제원 위원의 “N○○에게 김영재, 박채윤 부부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N○○에게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N○○ 교수한테 리프팅 실 사업 도와주라고 소개도 안 했습

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